



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의회

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9. 3. 8. 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: 서동학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19년 2월 26일

○ 회부일자: 2019년 2월 27일

3. 개정이유

충북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 및 한국문화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,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수행과 학교생활 적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다문화예비학교의 지정·운영을 규정함(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충북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다문화 학생 상당수가 한국어 능력과 우리 사회 및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업수행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

는 실정임. 이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 함양과 한국 사회 및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통하여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.

- 주요 개정내용은 제12조에 다문화예비학교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, 다문화 예비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음.
- 충북의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학생 수를 보면 2016년 4025명(초 2,892명, 중 600명, 고 533명), 2017 4568명(초 3317명, 중 670명, 고 581명), 2018년에는 5,047명(초 3,727명, 중719명, 고601명)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.
- 한국어능력이 미숙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학업수행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,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중단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습득과 한국문화 이해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 판단됨.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주요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을 준수하고 있으며, 다문화예비학교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문화함으로써, 다문화예비학교 운영 확대와 이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능력과 기초학습능력, 학교 생활 적응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.